

회 칩

The regulations of a membership



제1장 총 칩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국문명칭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이하 ‘클럽’ 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HaeundaeBeach Golf & Resort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골프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체육의 발전, 관광사업의 진흥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사무소)

본 클럽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대변로 74번지에 두며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수)

본 클럽의 정회원수는 총 300명이다.

제5조 (회원의 정의)

체육시설법 법률 제17267호 2조 4항 ‘회원의보호’ 조항에 따라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의 “회원” 이란 골프장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 클럽과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정회원 | 6. 명예회원 |
| 2. 로얄회원 | 7. 외국인회원 |
| 3. VIP회원 | 8. 기타회원 |
| 4. 지정회원 | 9. 무기명회원 |
| 5. 지명회원 | |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회원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원의 자격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2. 로얄회원

로얄회원은 정회원과 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로얄회원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회원대우를 받는다.

3. VIP회원

VIP회원은 정회원과 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VIP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회원대우를 받는다.

4. 지정회원

지정회원은 정회원, 로얄회원, VIP회원이 지정한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지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정한 대우를 받는다.

5. 지명회원

지명회원은 정회원이 지명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자로 하며 회사가 정한 대우를 받는다.

6.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7. 외국인회원

외국인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자로 한다.

8. 기타회원

- 1)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할 수 있다.
- 2)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9. 무기명회원

무기명회원은 VIP회원이 지정한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자로 하며 지정한 회원의 종류에따라 회사가 정한 대우를 받는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8조 (입회)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및 기타비용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1. 입회신청을 할때에는 실제로 이용할 자를 지정 및 지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원에게 입회한 날부터 30일내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원증 교부일(이하 ‘입회일’ 이라 한다)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퇴 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 할 수 있다.
2. 외국인 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하며, 입회시의 원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3. 주중(평일)회원 및 특별회원 등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1.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2. 회원간 또는 클럽 내 기타 사유로 고소,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인 자
 3. 기초확정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4. 국내 골프클럽에서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회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켜 이사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 6.클럽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자
- 상기 사항에 해당 될 시 회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회비 및 기타의 납입 의무를 3개월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회칙 및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 이상 된 경우
5. 주소 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와 회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7. 제명의 의의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한 때
2. 제15조에 의하여 탈퇴한 때
3. 제11조에 의하여 제명된 때
4. 회원이 클럽의 운영정책에 반하여 업무방해, 소송 등의 행위를 할 때
5.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6.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 법인이 해산하여 소멸할 때

제13조 (회원 자격의 승계)

1. 정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권 양도·양수)

1. 회원권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사에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한다.
3. 회원권을 양수하여 본조2항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본 클럽 공개된 장소에 양수자의 성명 및 사진 등을 일정기간 공지 후 기존 회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승인한다. 단, 이사회의 미승인을 이유로 입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제15조 (탈퇴)

1.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입회일로부터 5년 내에 탈퇴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 경과 시 탈퇴한 것으로 본다.
2.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 계약의 연장시에는 연장용 약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클럽내 부대시설을 회사가 정한 회원의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기 대회와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17조 (회원의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등 신상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골프장 이용 시 모든 시설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회원은 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8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의결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회칙 및 이용약관의 개정, 본 클럽 경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의의 처리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권익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3. 운영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클럽의 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된다.

제6장 경기규칙

제20조 (경기규칙, 로컬룰, 임시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1조 (로컬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필요에 따라 Local Rule의 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사가 정한다.

제22조 (관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7장 부 칩

제23조 (부칙)

1. 회칙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은 이사회가 확정하여 제정한다.
2.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개정할 수 있다.
3. 회사는 회칙 개정 시 본 클럽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개정 내용을 공고한다.
4. 회원은 회칙 개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을 본 클럽에 밝혀야한다.
5. 회원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회칙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